瑞山市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6. 15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6. 16

라. 上程日字 : 1999. 6. 25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企劃監査擔當官 金 知 榮)

가. 提案理由

○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제2항의 "보조금 교부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이

- 보조금관리 업무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원칙에도 합당하지 않아 동 조항을 폐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보조금 교부조건에 있어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동조례 제7조 제2항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살펴보면

-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동조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는 규제의 원칙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지며,

-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후 보조금 정산서 작성시 수익발생 은폐등 폐단이 발생되어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의 투명성 확보와

- 본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상기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는 없음.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 :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제7조 제2항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는?

답변 :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행정적으로 장려하는 사업과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양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건을 적용할 시는 사업자의 의욕상실과 그동안 보조금 사업중 큰 이익을 낸 사업이 없었으므로, 사실 이 조항은 규제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 査 結 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69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6. 11.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

제출년월일 : 1999. 6. 11.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개정 이유

○ 보조금 교부 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폐지하여 보조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보조금 교부조건에 있어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보조 사업자가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 참고 자료

가. 근거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

다. 서산시규제개혁 심의회

- 심사 : '98. 11. 16
- 결과 : 폐 지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생략)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현행과 같음) (삭제)